2025년 제3차 정기 노사협의회 협의 결과

회 의 일 시	2025. 9. 11.(목) 10:00-11:30
회 의 장 소	본원 21층 임원회의실
참 석 자	· 근로자위원(3명) : 조 의장, 김 위원, 이 위원 · 사용자위원(3명) : 하 의장, 박 위원, 이 위원 * 참 관 : 박 부원

협의내용	분류	세부내용	협의 결과
보 고 사 항 (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6조)	1호	□ 직위별 보직기준 신설에 따른 보고	□ 보고 완료
협 의 사 항 (제24조)	8호	□「취업규칙」 제16조(휴일) 조항 개정 (현행) 자체 지정 임시휴일 가능성 있는 조항 → (개정) 자체 지정 임시휴일 조항 삭제 개정 ※복무감사 및 복리후생 제도 개선 지적 요구	□ 전사 공지 및 개정 투표 추진
	9호	□ 연차 적용 기준 30분 단위 신설 (현행) 30분 연차 없음 → (변경) 30분 연차 도입	□ 30분 연차 도입 완료
	6호	□ 출퇴근 시 지문 누락 대처방안 개선 (현행) 뉴스보도에 따른 지연 증명도 미인정, 지각확인서 시간 범위 지정되지 않아 매번 확인 필요, 기록누락 시 증빙 제한적→ (요청) 지연증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지각확인서 사용 견본 안내, 근무확인서 양식 신설하여 근로시간 인정 방법 확대 등	□ 현행 유지 ※종합감사 결과 등을 반영한 방안 향후 검토
		□ 가족과 함께하는 날 적용 범위 확대 (현행) 수, 금 월 2회(오후) → (요청) 오전으로 범위 확대	□ 현행 유지
		□ 장기재직 포상 휴가 신선 (현행) 없음 → (요청)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 제20조(특별휴가)[1] 준용	□ 공공기관 적용 운영 가이드 및 유관기관 적용검토 후 도입 논의

1)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 제20조(특별휴가) …⑱ 행정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재직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를 각 1회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5조제2항에 따른다. <신설 2025.7.22.>
1.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: 5일 2.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: 7일

2025년 제3차 정기 노사협의회 (9. 11.)

참석위원 확인	근로자위원 성명	서 명	사용자위원 성명	서 명